

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노사 관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무국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위탁운영 근거 신설(안 제9조제1항)

나. “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단서 중 “제4조제3항제3호”를 “제3항제3호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둘”을 “설치할 수 있으며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할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제3조의 각 호”를 “제3조 각 호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협회의의 구성) ① (생략)	제4조(협회의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. 다만,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(互選)하는 사람 1명이 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.	② -----. ----- ----- 제3항제3호 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9조(사무국) ① 협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.	제9조(사무국) ① ----- ----- ----- 설치할 수 있으며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할 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의견청취 등)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제3조의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,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노사대표	제12조(의견청취 등) ① ----- ----- 제3조 각 호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
청취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,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역 노사민정”이라 한다)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 수여,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2조(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, 구성 및 기능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역 노사민정”이라 한다)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 다만,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(互選)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.
- ④ 협의회는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 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 3.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4.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-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 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 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는 구성·운영,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·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재정수반요인 발생(안 제9조제1항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위탁운영에 따른 세출의 정확한 추계는 어려우나 작년 기준 운영비 등의 소요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, 추산했을 때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.

※ 2021년 기준 : 86,010천원(운영비 76,770 / 회의참석 수당 9,240)

4. 작성자

- 노동복지과 노사정책담당 강홍구 (054-480-6202)

소 관 부 서		노동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김 팔 근
	담 당	최 경 덕
	담 당 자	강 홍 구 (480-6202)